



## 교직원 복무 규정

규정번호	2-1-5
제정일자	2002. 12. 1.
개정일자	2023. 2. 23.
책임부서/팀·계	사무처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원(비전임교원 제외), 조교,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9.5.1.개정> <2021.8.20.개정> <2023. 2. 23. 개정>

**제2조(책임완수)** 교직원은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무)** ① 교직원은 관계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소속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교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직원은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⑤ 교직원은 공·사를 분별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⑥ 교직원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청렴하여야 한다.

**제4조(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경비원 기타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출장)** ① 총장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교직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이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교한 때에는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술로 할 수 있다.

**제6조(해직된 교직원의 근무)** 해직된 교직원에 대하여 업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복장)** 교직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 하여야 한다.

### 제2장 근무시간

**제8조(근무시간)**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1주일에 40시간으로 한다. 시업시간 09:00, 종업시간은 18:00로 한다. <2019.12.18. 개정>

**제8조의 2 (결근)** ① 교직원이 결근 또는 지각, 조퇴, 외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다른 교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2019.2.28. 신설>

② 교직원이 2시간 이상의 지각, 조퇴, 외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2019.2.28. 개정>

**제8조의 3 (휴게시간)** ① 근무시간 중 12시부터 13시까지 중식을 휴게시간으로 한다.

② 시간외 근무시간 중 18시부터 19시까지 석식을 휴게시간으로 한다.

③ 공휴일 근무에도 ①, ②항을 적용한다. <2019.11.14. 개정>

**제8조 4(휴일)**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일요일
2. 법정공휴일
3. 개교기념일
4. 임시휴일 · 근로자의 날(5월 1일) 및 국가 또는 대학에서 정한 날 <본조신설 2019.12.18.>

**제9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본 대학의 특수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근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2(임산부의 보호)** 교직원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1일 2시간의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2.>

**제9조3(육아시간)** ① 본 대학은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성 교직원에게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허용할 수 있다. <2023. 2. 23. 개정>

② 본 대학 내에 수유시설이 없는 경우 출·퇴근시간을 각 1시간씩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2.>

**제10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 총장은 학교 운영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총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 2 (시간외 근무)** ① 연장·야간·휴일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실시할 수 있다. <2023. 2. 23. 개정>

② 연장·야간·휴일근로는 『보상휴가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2019.5.1. 신설>

**제10조의 3 (보상휴가제)** ① 시간외 근무를 실시한 교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 <2023. 2. 23. 개정>

② 보상휴가에 대하여는 『보상휴가 시행지침』에 따른다. <2019.5.1. 신설>

**제10조의 4 (탄력근무제)** ①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근로일) 범위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당일 출근시간을 조정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021.6.11.개정> <2023. 2. 23. 개정>

② <2019.5.1. 신설> <2019.11.14.별표2 개정> <2020.10.12.별표2 개정> <2021.4.30.별표2 개정> <2023. 2. 23. 삭제>

**제10조 5(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교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한다. <본조신설 2019.12.18.>

### 제3장 휴 가

**제11조(휴가의 종류)** 교직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2조 (연가일수)** ① 교직원의 재직기간별 학기 중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2016.9.2.개정, 2019.2.28. 개정>

재직기간	연가일수
1년미만	11일
1년이상 3년미만	15일
3년이상 5년미만	16일
5년이상 7년미만	17일
7년이상 9년미만	18일
9년이상 11년미만	19일
11년이상 13년미만	20일
13년이상 15년미만	21일
15년이상 17년미만	22일
17년이상 19년미만	23일
19년이상 21년미만	24일
21년이상	25일

※ <2016.9.2. 삭제>

② <2016.9.2. 개정><2019.2.28. 삭제>

③ 학교는 연가 소진을 위하여 그 사용을 적극 촉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학교의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사용 연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학교법인 순효학원에서 유지·경영하는 학교에 실제 근무한 연수를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2. 임신 중인 여성, 육아휴직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휴직한 기간 <2016.9.2. 신설, 2019.12.18. 개정>

**제13조(연가 계획 및 허가)** ① 연차휴가는 교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대학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총장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19.2.28. 개정>

② 연차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2019.2.28. 신설>

**제13조의1(연가의 저축)** 당해 연도 연가일수에서 미사용 연가일수 최대 5일까지는 차기 연도로 연가를 저축할 수 있으며, 저축한 연가의 사용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2.26.>

**제14조(병가)** ①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는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병가기간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연가 활용 후에도 병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잔여병가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9.12.18. 개정>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교직원의 출근이 다른 교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②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18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공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

를 허가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 절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2020.10.24. 신설>

**제16조(특별휴가)** ① 교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13.1.23.별표1 개정, 2019.12.18.별표1 개정, 2020.10.12.별표1 개정>

② 임신 중의 여성 교직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교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23. 2. 23. 개정>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종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여성 교직원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3. 2. 23. 개정>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교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1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23. 2. 23. 개정>

⑥ 10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매 10년마다 5일 이내의 유급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2019. 5. 1. 개정> <2023. 2. 23. 개정>

⑦ 정년퇴직(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포함)을 앞둔 교직원에게 퇴직예정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유급 퇴직 준비휴가를 준다. <2019. 11. 14. 개정> <2023. 2. 23. 개정>

⑧ (배우자의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단,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018.6.8. 개정, 2019.12.18. 개정>

⑨ 하계방학 기간 중 유급휴가 7일, 동계방학 기간 중 유급휴가 5일을 각각 부여한다. 단, 총장이 정하는 기간에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이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9.5.1.신설>

⑩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2019.12.18. 신설>

⑪ 임신 중인 교직원은 월 1일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위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2020.10.12. 신설> <2023. 2. 23. 개정>

**제17조(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수당)** 제16조 2항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수당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8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교직원은 유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총장에게 신고하고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단, 교원의 경우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2016.9.2. 개정>

**제20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 제 4 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21조(영리업무의 금지)**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교직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학교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학교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 할 수 없다.

1. 교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경우
2. 교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2조(겸직허가)** ① 교직원이 제2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부 칙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재직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7
	자녀	2
출산·입양	배우자	10
칠순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1
팔순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1
사망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7
	자녀,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3
	본인의 형제자매	3
	본인의 외조부모	3
탈상	배우자	3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2
	본인의 조부모	1
	본인의 형제자매	1